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증장애인 확인 업무에 필요한 민감 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예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부담금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확인 등에 필요한 민감 정보 활용 및 처리 근거 마련

1) 중증장애인 확인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사정보 활용 근거 마련
(안 제4조제2항제3호)

2) 중증장애인 확인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
(안 제82조제2항제41호 신설)

3)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장애인고용법 제25조의 사무(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사무(중증장애인 확인) 추가(안 제82조의2제15호, 제26호)

항 없음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1) 사내강사 자격기준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의2제5항)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적법한 강사에 의한 교육 간주 규정 마련(안 제5조의2제6항)

3)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5조의2제8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2제1항)

라.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인하 (안 제40조제1항)

바.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안제81

조의2제5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제5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대상”을 “근로자(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관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적용제외 공무원 수

3.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

4.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별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를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로,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를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한다.

제8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제82조제2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제82조의2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의2를 제17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2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생략)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3.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④ (생략)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신설>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

----- 근로자(장애인 공무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

	<u>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u> 1. <u>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u> 2. <u>기관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적용제외 공무원 수</u> 3. <u>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u> 4. <u>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별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u> 5. <u>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② <u>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u>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u>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u>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u>한다. ② (생략)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u>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u> 1. ~ 4. (생략) <u><신 설></u>	----- <u>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u>하고----- ----- <u>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u>-----.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무원연금법</u>」에 따른 <u>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u>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	제40조(연체금의 징수) ① -----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u>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u> 1. ~ 40. (생략) <u><신 설></u> ③·④ (생략)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0. (현행과 같음) <u>4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확인</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제8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 ----- ----- ----- ----- ----- ----- ----- ----- ----- -----
1. ~ 14. (생략) <u><신설></u>	1. ~ 14. (현행과 같음)
15. ~ 24. (생략)	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u><신설></u>	16. ~ 25. (현행 제15호부터 제 24호까지와 같음)
	2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증장애인의 확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연 락 처	(044) 202 - 748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